

#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정재웅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638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5월 9일

발 의 자 : 정재웅, 박상구 의원 (2명)

찬 성 자 : 김중무, 최 선, 김경영, 채인묵,  
이태성, 김제리, 고병국, 임만균,  
송아량, 김정태 의원 (10명)

## 1. 제안이유

-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개정(2019.4.23.)으로 임대수요가 높은 역세권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 주변 등 역세권에 지정하는 촉진지구의 최소면적기준이 1천제곱미터로 완화되어 변화된 기준을 서울시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면적 기준을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함(안 제2조제6호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 중 “2천제곱미터”를 “1천제곱미터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"촉진지구"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말하고, 그 면적은 <u>2천제곱미터</u> 이상으로 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----- ----- <u>1천제곱미터</u> -----.</p>